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개정 2019년 01월 29일

개정 2020년 01월 22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실업팀운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및 구성 등)** ① “경기인”이란 부산광역시체육회실업팀(이하 “실업팀”이라 한다)에 두는 각 선수단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신설2020.01.22.>

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실업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신설 2020.01.22>

③ 실업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과 지도자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20.01.22.>

④ 단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업운영본부장, 총감독은 담당 부장으로 하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01.22.>

1. 단 장 : 실업팀 대표 및 운영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실업팀 운영 지휘 감독

3. 총감독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실업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⑤ 실업팀 운영의 종목 및 인원(지도자, 선수)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력향

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20.01.22.>

## 제 2 장 자 격 및 복 무

**제3조(임용 및 자격)** ① 실업팀의 지도자 및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전임지도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지도자로부터 선수 추가 및 중도교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용기준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1.22.>

구 분	자 격 요 건
지 도 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신설 2020.01.22.> ·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자 또는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 만60세 미만인 자
트레이너 <신설 2020.01.22.>	· 트레이너 관련 자격 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신설 2020.01.22.> · 만60세 미만인 자 <신설 2020.01.22.>
선 수	·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종목의 전국대회 입상자 · 만40세 미만인 자

**제3조의2(경기인의 정년)** ① 경기인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만60세

2. 선수 : 35세(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경기인이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연도 중에 있으면 당해연도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본조신설 2020.01.22.]

**제4조(임용서류)** ① 실업팀에 입단하는 경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2.>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타 실업팀에서 이적해 올 경우 전 소속팀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해임)**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경기성적이 저조하며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경우
4. 사고 및 부상 등으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휘 감독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3회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개정 2019.01.29.>
6.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7. 기타 행정상, 재정상 사유로 해임이 불가피하였을 경우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7.12.21.>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01.22.>

**제6조(지휘감독)** 실업팀의 지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실업팀의 관리부서는 본회 업무분장에 따른다.
2. 지도자 및 선수는 총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 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4. 트레이너는 선수 부상 방지 및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한 책임을 갖는다<신설 2020.01.22.>

**제7조(복무)** ① 지도자와 선수는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기타 복무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급여 및 기타 보상

**제8조(지급)** ①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금전관련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1.22.>

1. “연봉”이라 함은 지도자 및 선수가 본회와 계약한 총금액으로, 급여와 훈련보조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급여”에 대한 금액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3. “훈련보조비”에 대한 금액은 별표 1의 훈련보조비 종류 및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1일에 지급한다.
4.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5. “지도자 정근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연 2회(1월, 7월) 지급한다. <신설 2019.01.29.>
6. 지도자 상여금 : 연2회(설날, 추석) / 전임지도자 기본급 60% <신설 2020.01.22.>
7. 관리지도자, 트레이너 상여금 : 연2회(설날, 추석) / 30만원 <신설 2020.01.22.>

**제9조(계약기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계약형태는 1년단위 계약직을 원칙으로 하며 기량이 탁월한 우수선수는 2년~3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서식 1. 계약서)

**제10조(등급책정)** 책정 등급은 별표 2에 의거 지도자 4등급, 선수 4등급으로 차등 구분 한다.

**제11조(등급조정)** 지도자, 선수의 등급조정은 계약 시점에서 개인별 기준에 맞는 등급을 매년 분석 산정하여 조정한다.

1. 등급기준을 참조하되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및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

였으나, 전국체육대회와 상응한 대회(국제대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등)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현재의 등급을 유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급 조정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으로 등급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4. 등급의 조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지원금 및 보상금)** ① 실업팀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별 필요에 따른 각종 지원금 및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 관리를 위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거한 일시지원금(계약금) 및 별표2의 기준에 의거한 훈련지원비 <개정 2016.12.16>
2. 관리지도자에 대한 훈련지원비
3. 경기력향상과 선수단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국내·외 각종대회 입상 격려금
4. 경기력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5. 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구입비
6. 지도자 및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필요한 피복비
7. 경기력향상과 경기적응 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유료시설 사용료
8. 지도자 및 선수의 4대 보험 가입비
9. 지도자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
10. <삭제 2020.01.22.>
11. 기타 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제13조(성과수당)** ①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의지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별 연봉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성과수당으로 산정하여 전국체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설정금액 및 목표성적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 제 4 장 훈 련 및 대 회 참 가

**제14조(훈련계획)** 선수 훈련은 상시훈련, 전지훈련, 특별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상시훈련

가. 팀별 훈련 장소는 본회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지도자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지도자는 연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서식 2의 월간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계획 외에 특별훈련이 불가피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2. 전지훈련

가. 시 기 : 훈련계획에 의거 실시

나. 기 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실시

다. 효 과 : 정신력 강화, 사기양양 및 동기유발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라. 결과보고 : 서식 3의 전지훈련결과보고서를 훈련 종료시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3. 특별강화훈련

가. 집중훈련기인 동계기간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하계기간에 강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경기력향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대회참가)** ①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회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회 종료 후에는 서식 4의 대회참가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대회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는 단장의 승인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 5 장 차량 지원 및 합숙소 설치 운영

**제16조(차량 및 유류비 지원)**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의 운영)** ① 부산시체육회실업팀 선수 중 타 시·도 선수 및 합숙훈련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합숙소 운영지침에 따른다.

###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6.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01.29.>

### 훈련보조비 종류 및 지급기준

(제8조제3호 관련)

(단위 : 천원/월)

구 분	지도자	선 수
	1~3등급	1~4등급
급 량 비	300	300
교 통 비	100	100
목 욕 비	100	100
계	500	500

[서식 1] <개정 2019.01.29.>

<지도자용>

성 명(종목명)

#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3 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지도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당사자)

(갑) 부산광역시체육회장(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77 체육회관)

(을)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제2조(소속 및 직책) “을”의 소속은 부산광역시체육회 \_\_\_\_\_팀 지도자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②“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간 득점이 없을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지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6. 예산감축 등으로 선수단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보수 및 지급방법) ①“을”의 연봉은 총 금 \_\_\_\_\_원으로, 급여 금 \_\_\_\_\_원, 훈련보조비 금 \_\_\_\_\_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급여는 연 12회(1월~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③훈련보조비는 연 10회(1월~10월)로 분할하여 매월 1일 지급한다.

④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연2회(1월,7월)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을”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공익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참가 등 선수단 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부산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지도력 향상과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3 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선수(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당사자)

(갑) 부산광역시체육회장(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77 체육회관)

(을)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제2조(소속 및 직책) “을”의 소속은 부산광역시체육회 \_\_\_\_\_ 팀 선수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경기인이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간 득점이 없을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6.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보수 및 지급방법) ①“을”의 연봉은 총 금 \_\_\_\_\_ 원으로, 급여 금 \_\_\_\_\_ 원, 훈련보조비 금 \_\_\_\_\_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금 \_\_\_\_\_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급여는 연 12회(1월~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③훈련보조비는 연 10회(1월~10월)로 분할하여 매월1일 지급한다.

④계약금은 일시금으로 계약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을”은 「부산광역시체육회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로서 공익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부산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경기력 향상과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책정 등급** (제8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연봉액 책정 등급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최초 연봉액	자격증	지급 기준
전임 지도자	1	40,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지도자</li> <li>·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실적 있는 지도자</li> <li>·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500점이상 실적이 있는 지도자</li> <li>· 전략,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지도자</li> </ul>
	2	35,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li> <li>·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종목의 경우 4강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획득실적이 있는 지도자</li> <li>·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실적 있는 지도자</li> </ul>
	3	30,000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li> <li>·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li> </ul>
관리 지도자	4	25,000 이하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li> <li>· 팀 운영상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자</li> <li>·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li> </ul>

(비고)

1. 재임용시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 전년도 연봉액의 ±3%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리지도자는 제외한다.  
가. 목표성적(득점) 달성(하락)시 연봉액을 조정한다.
2. 등급은 산정일로부터 3년 경과후 재조정 할 수 있다.
3. 지도자 정근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연2회(1월, 7월) 지급한다.

2. 선수 연봉액 책정 등급

(단위 : 천원)

등 급	연 봉	지 급 기 준	비 고
특급	80,000 이상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성적을 획득한 선수	
1	80,000 이하	· 현 국가대표선수 ·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	
2	60,000 이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3	40,000 이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1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4	20,000 이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입상 및 점수 획득이 가능한 선수 · 별도의 직업을 가진 선수	

※ 종목의 특성상 등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의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서식 2]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      월 ) 운 영 계 획 서

결 재	담당	부장

팀 명		훈련인원	
훈련기간		휴 일	
훈련목표			
중점사항	- - - - -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기 간		장 소	
	목 적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대 회 명			
	참가 세부종목			
	기 간		장 소	

특이사항	- - -			
------	-------------	--	--	--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3]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	부장

팀 명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명단)			

훈련결과	-
	-
	-
	-
	-

분석 및 문제점	-
	-
	-
	-
	-

향후대책	-
	-
	-
	-
	-

훈련비정산	지	숙박비	운임	기타
	출 액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4]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	담당	부장

대회개요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성명	내용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세부결과

구분	성 명	결과	당초예상전력	비고

경기력 분석 및 향후대책

-
-
-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	--	-----	------	------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별표 3]

**선수 일시지원금(계약금) 지원 기준 [본항신설 2016.12.16]**

(제12조 제1항 관련)

등 급	등 급 분 류 기 준	지 급 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대표(현)</li><li>·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1위 이상의 실적</li><li>· 올림픽 입상자(2년 미만 경과자)</li></ul>	5,000만원 이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근5년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자</li><li>· 아시안게임 입상자(2년 미만 경과자)</li><li>·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2위 이상의 실적</li></ul>	4,000만원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대표 상비군(현)</li><li>·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동메달획득 실적 이상</li></ul>	3,000만원 이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년도 전국체전 득점 획득자</li><li>·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 자</li><li>·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li></ul>	2,000만원 이하